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May 15, 2020

[코로나 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관세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최신 세무예규판례](#)

코로나 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8일 정부로 이송됨.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함.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결제 분을 세제지원하여 선결제 참여를 확산 유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구매 시 선 결제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 시 소득세, 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함.

(대상) 2020년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구입처) 소상공인. 단, 부동산임대, 유통, 전문자격사, 금융 보험업 등은 제외함.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7월 중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선결제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7월 중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개정안)

구분	~ 2020. 2 월	3 월	4 월~7 월	8 월 ~12 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전에는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가능하지만, 2020년 전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전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조기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함.

(지원대상)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신고한 기업으로서, 2020 연도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지원내용) 2019 연도분 법인세액·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

(신청기한) 2020 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예: 12월말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8%) 수준으로 인하함.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관세 징수유예제 도입으로 피해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관세청은 코로나 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힘.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임.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9개월이며, 예외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임.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관세법 제 26 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에 따라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의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투자자에게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하 "초과상환액"이라 함)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일정한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상환우선주 처리방식을 모두 수용할 경우 조세형평을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투자자가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초과상환액을 이자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조심 2019 서 3882, 2020. 4. 16.)

이번 쟁점에 대하여 과거 국세청은 이번 심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한 바 있으며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 12. 14.), 기획재정부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초과상환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현금배당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상환전환우선주를 세법상 자본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2019. 2. 20). 이번 심판례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 · 추가납부세액의 귀속사업연도

구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추가납부 대상인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본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이번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 ·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 대상인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는 취지의 해석으로 사료되며, 해당 세액을 실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세법해석 정비로 삭제되었는 바,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198, 2019. 11.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 - 0002, 2018. 5. 24.*)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김상윤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i@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지방세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기업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이종형 709-8195 Jonghyung.lee@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삼일회계법인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